



검 토 보 고 서

-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운 영 위 원 회
전문위원 김 학 철

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1. 발의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박은경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4월 1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의원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교섭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의원 단체 간 교류·협력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로 각종 의안 심사 및 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시 의원 간의 소통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